

2019. 10. 3. 판결
유럽사법재판소 제3합의부
사건번호 C-18/18

#페이스북
#게시물 접근차단
#호스팅 제공자의 의무
#전자상거래지침

2019년 10월 3일 판결

유럽사법재판소 (제3합의부) 판결

“선결판단을 위한 요청 - 정보 사회 - 서비스의 자유로운 거래 - 전자상거래지침 (2000/31/EG) -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제14조 제1항 및 제 3항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 권리침해를 중단시키거나 저지하는 것이 제공자에게 요구되는지에 대한 가능성 - 제18조 제1항 - 처분범위의 인적, 사실적 및 공간적 제한 - 제15조 제1항 -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 없음”

사건번호 C-18/18

2017년 10월 25일 결정에 따라 오스트리아 대법원에 의해 신청된 유럽연합조약 (AEUV) 제267조에 따른 선결판단 요청은 2018년 1월 10일 유럽사법재판소에 접수되었으며,

각 당사자는 에바 글라비시니 피스체크(Eva Glawischnig-Piesczek)와 페이스북 아일랜드 (Facebook Ireland Limited)이다.

유럽사법재판소(제3합의부)

합의부장인 A. Prechal, 판사 F. Biltgen, J. Malenovský (보고관) 및 C. G. Fernlund과 판사 L. S. Rossi의 협력 하에

법률고문관: M. Szpunar,

의장: D. Dittert, Referatsleiter,

2019년 2월 13일의 서면절차 및 구두심리에 근거하여,

다음에 대한 고려 하에

- 변호사 M. Windhager 와 W. Niklfeld 이 변론하는 Glawischnig-Piesczek
- 변호사 G. Kresbach, K. Struckmann 및 A. Tauchen이 변론하는 Facebook Ireland Limited
- G. Hesse, G. Kunnert 및 A. Jurgutyte-Ruez가 대리인으로 대표하는 오스트리아 정부
- I. Kucina, E. Petrocka-Petrovska 및 V. Soñeca가 대리인으로 대표하는 라트비아 정부
- L. Inez Fernandes 및 M. Figueiredo가 법률고문 T. Rendas의 도움을 받아 대리인으로 대표하는 포르투갈 정부
- J. Heliskoski가 대리인으로 대표하는 핀란드 정부
- G. Braun, F. Wilman, S. L. Kaléda und P. Costa de Oliveira가 대리인으로 대표하는 유럽연합 위원회

2019년 6월 4일 폐회발의에서의 법률고문관의 최종의견 청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1. 선결적 판단은 국내시장에서의 정보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 상거래의 특정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6월 8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G (“전자상거래지침”) (ABl. 2000, L 178, S. 1) 제15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2. 이는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웹사이트로 운영되는 어떤 사용자 페이지에 글라비니시 피스체크와 관련된 명예훼손 발언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한 것으로 인한 글라비니시 피스체크와 아일랜드에 기반을 둔 페이스북 아일랜드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기인한다.

법적 범위

유럽연합법률

3. 판단근거인 전자상거래지침 6, 7, 9, 10, 40, 41, 45 내지 48, 52, 58 및 60는 다음과 같다:

“(6) … 본 지침은 국내시장에서 문제를 초래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따라서 조약 제5 조에 따른 부수적 원칙 제명을 충족시켜야 한다.

(7) 법적 확실성 및 소비자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본 지침은 국내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명확하고 일반적인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9) 여러 관점에서 정보사회 서비스의 자유로운 거래는 일반 원칙의 특별한 국내법상 특징, 예를 들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각 국에서 정하고 있는 제 10조 제1항의 의미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 서비스에 관한 지침은, 이러한 활동이 동 조항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고 언급된 조항 제2항과 조약 제46조 제1항에 따른 제한에만 복속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관련된 개별국가의 법률의 근본적인 규율과 원칙은 본 지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10) 비례원칙에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국내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만이 규정된다. 국내시장이 실제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국경 장벽이 없는 영역이 되기 위해서, 동 지침은 국내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영역에서 공공이익, 특히 청소년보호, 인권보호, 소비자보호 및 공중보건보호 등에 기여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

(40) 중개자 역할을 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법률 및 판례법에 기존에 존재하고 전개되는 차이는, 특히 국경 간 서비스 개발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경쟁을 불공정하게 만들므로써 국내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방해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거나 중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지침의 조항은 승인되지 않은 정

보의 제거 및 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41) 본 지침은 다양한 이해관계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이 산업의 규약과 표준이 기반을 둘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한다.

...

(45) 본 지침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은 다른 유형의 명령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특히 위법한 정보의 삭제 및 접근차단을 포함하여, 권리침해의 중단 및 방지를 요구하는 사법상 또는 행정상 명령일 수 있다.

(46) 책임의 한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저장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인식하는 즉시 해당 정보를 제거하거나 접근 차단을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 제거 및 접근 차단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원칙 및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수립된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본 지침은 회원국이, 정보 제거 또는 접근 차단 이전에 지체 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특별한 요청을 규정할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47) 회원국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것이 일반적인 성격인 경우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저지된다. 이는 구체적인 경우의 모니터링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국내법에 따라 개별적인 국가 당국이 발령하는 명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8) 본 지침은 회원국이, 자신의 서비스의 사용자에게 의해 제공된 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유형의 의법행위를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게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기대되며 국내법상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를 적용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52) 국내시장이 제공하는 자유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려면 피해자가 분쟁 해결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사회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신속성 및 지리적 확산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수성과 국가 당국이 상호적으로 가져야 하는 신뢰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필요성으로 인하여, 본 지침은 회원국이 적절한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원국은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 전자적 접근을 생성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58) 본 지침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3국에 설립하여 제공한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국제적인 차원을 고려할 때, 커뮤니티 규정이 국제규범과 일치하는 것이 도모되어야 한다. 국제기구(WTO, OECD, UNCITRAL 등)의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 결과는 본 지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60) 전자상거래의 제약 없는 발전의 의미에서,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 분야의 혁신적인 조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 구성은 명확하고 단순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국제 수준에 적용되는 규율과 일치해야 한다.”

4.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호스팅”)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회원국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으로 형성되는 정보사회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저장된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a) 제공자가 위법한 행위 또는 정보에 관한 실제적인 인식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 또는 정보가 명백하다는 상황이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또는

b) 제공자가 이러한 인지나 인식을 한 즉시, 정보를 제거하거나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체없이 조치를 취한 경우

...

(3) 본 조는 회원국의 법률 시스템에 따라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권리침해를 중단하거나 방지하도록 요구할 가능성 또는 회원국이 정보를 삭제하거나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본 지침 제15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회원국은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의미에서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

송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나타내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6. 본 지침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회원국은 정보사회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이, 추정되는 권리침해를 중단시키고 이해관계인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포함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법

7. 일반 민법전 (ABGB) 제1330조 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에 의해 실질적인 손해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 민법전 제1330조 제2항에 따르면 이는 또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신용, 생업 또는 승진을 위태롭게 하는 사실을 유포하고 그가 그 허위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동 내용의 철회 및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8. 저작권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통해 묘사된 인물의 이익 또는 출판에 대한 승인이나 지시 없이 사망한 경우 가까운 유족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인물의 초상은 공개적으로 전시되거나 일반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포되어서는 안 된다.
9.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호스팅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저장, 전송 또는 접근을 허용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상황을 탐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 소송 및 선결문제

10. 글라비시니 피스체크는 오스트리아 국회의원으로, 녹색당의 의장이며 연방 대변인이었다.

11. 페이스북 아일랜드는 미국 및 캐나다 이외 지역의 사용자를 위한 글로벌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하: 페이스북 서비스)을 운영한다.
12. 2016년 4월 3일 한 페이스북 서비스 사용자가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페이지에 오스트리아 온라인 뉴스매거진 oe24.at의 “녹색당: 난민을 위한 최소보장은 존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다. 동 게시물에는 기사 제목과 간략한 요약 및 글라비시니 피스체크의 사진이 포함된, 원래의 웹사이트의 “썸네일 미리보기”가 생성되었다. 또한 사용자는 동 게시물에 대해, 관련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원 소송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 및 비방할 가능성이 있는 코멘트를 게시했다. 동 게시물에는 모든 페이스북 서비스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었다.
13. 2016년 7월 7일 서면으로 글라비시니 피스체크는 페이스북 아일랜드에, 무엇보다도 동 코멘트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14. 페이스북 아일랜드가 해당 코멘트를 삭제하지 않자, 글라비시니 피스체크는 오스트리아 빈 상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 법원은 2016년 12월 7일 페이스북 아일랜드에 즉시 그리고 부작위청구에 대한 판결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첨부된 텍스트에서 해당 코멘트(12 단락과 비교)와 구문 및(또는) 의미가 동일한 주장이 배포되는 경우, 원 소송 원고가 적시한 사진을 출판 및(또는) 배포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15. 페이스북 아일랜드는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에서 원래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16. 항소법원인 오스트리아 빈 고등법원은 문구가 동일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1심 명령을 확정했다. 한편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을 배포하는 것은 페이스북 아일랜드가 원 소송의 원고 또는 제3자에 의해 이를 인식하는 경우 또는 페이스북 아일랜드가 이를 인식했어야 하는 경우에만 중단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17. 빈 상사법원과 빈 고등법원은 저작권법(UrhG) 제78조 및 일반 민법전(ABGB) 제1330조로 자신의 결정을 뒷받침했으며, 특히 게시된 코멘트가 지나치게 명예훼손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원고가 범죄행위를 했다고 무고했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18. 원 소송의 양 당사자는 오스트리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19. 다수의 사용자를 보유한 소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호스팅 제공자에 대한 금지명령이, 그의 인식할 수 없는 구문 및/또는 내용이 동일한 게시물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호스팅 제공자가 어떤 사용자의 게시물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이미 적어도 한 번 침해되었다는 것을 인식했고 따라서 추가적인 권리침해에 대한 위협이 구체화된 경우라면, 이러한 의무는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졌다.
20. 그러나 해당 법원은 계류 중인 법적 분쟁의 경우 유럽연합법의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소송을 중지하고 선결판단을 위해 유럽사법재판소에 다음의 질문을 요청했다.
1.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위법한 게시물을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은 호스팅 제공자의 이하의 의무 중 하나에 위배되는가? 또한 동 지침 제14조 제1항 a의 의미에서의 위법한 정보뿐 아니라 그 밖의 문구가 동일한 게시물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 국제적으로
 - 개별 회원국에서
 - 전 세계의 개별 사용자의
 - 개별 회원국의 각 사용자의
 2. 질문1이 부정되는 경우: 이는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또한 적용되는가?
 3.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운영자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는 즉시, 적용되는 것인가?

선결문제에 대하여

첫 번째 및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21. 함께 심사되어야 하는 처음 두 가지 질문에서 요청법원은 전자상거래지침, 특히 제15조 제1항이 회원국 법원에 다음의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자 했다.
 - 호스팅 제공자에게 이미 위법하다고 결정된 게시물과 문구가 동일한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해당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 이는 누가 이러한 게시물의 저장을 위임했는지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 호스팅 제공자에게 이미 위법하다고 결정된 게시물과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해당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
 - 이러한 처분이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22. 우선 페이스북 아일랜드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의 의미에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23. 본 지침 제14조 제1항은, 본 조항에 열거된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즉 위법한 행위나 게시물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는 경우 또는 그가 이를 인식한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해당 게시물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경우, 호스팅 제공자의 책임을 배제한다.
24. 판단이유 45에 비추어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3항으로부터, 이러한 배제가 국내 법원 또는 국내 행정당국이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법한 게시물의 삭제 또는 해당 게시물에의 접근 차단을 포함하여, 권리침해를 중단시키거나 저지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25. 그 결과 법률고문관이 자신의 견해 제32호에서 상술한 것과 같이,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발급된 명령은, 그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에 열거된 대안적인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즉 그가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에도 호스팅 제공자에게 향하게 된다.

26. 또한 제3장 (“시행”)에 속하는 동 지침 제18조 제1항에 따라 회원국은, 정보사회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소송가능성이, 추정되는 권리침해를 중단시키고 관련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적인 조치를 포함한 신속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27. 본 사안에 대한 판결문 13 단락과 선결문제의 본문에서 유추되는 것처럼 페이스북 아일랜드는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위법한 게시물 존재를 우선 인식하고 있었다. 그 후 페이스북 아일랜드는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게시물 삭제하거나 해당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체없이 행위하지 않았다. 결국 원 소송의 원고는 해당 지침 제18조의 의미에서의 조치를 발령하도록 하기 위해, 국내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28. 동 지침의 판단이유 52에서 유럽연합 입법부가 정보사회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그것의 신속성과 지리적 확산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특별한 성격을 통하여 그리고 국가 당국이 상호간에 가져야 하는 신뢰에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통하여 회원국에게 적절한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이유가 확인된다.
29. 회원국은 전자상거래지침 제18조 제1항의 이행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발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소송과 절차와 관련하여 특히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30. 이러한 조치가 또한 해당 조항의 다른 언어 버전에 따라 -특히 스페인어, 영어 및 프랑스어- 명시적으로 “모든” 추정되는 권리침해를 중단하거나 관련되는 사람의 “모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것의 효력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은 동 조항의 다른 언어 버전 -특히 독일어- 이, 문제의 조치가 “추정되는 권리침해”를 중단시키고 “관련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31.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 제1항에서 다시 명백해지는 것은, 회원국이 제12, 13 및 14조의 의미에서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에 의해 전송되거나 저장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거나 위법한 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탐지하기 위한, 어떠한 일반적인 의무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32. 선결문제는 이러한 모든 조항에 대한 고려 하에 대답되어야 한다.
33. 요청법원은 첫째로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 제1항이 회원국 법원이 호스팅 제공자에게 이미 위법하다고 결정된 게시물과 문구가 동일한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해당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지 여부를 본질적으로 묻는다.
34.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 제1항은, 회원국이 호스팅 제공자가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거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지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동 지침의 판단이유 47로부터 유추되는 것은, 이는 “특별한 경우”의 모니터링 의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5. 이러한 특별한 경우는 무엇보다도 원 소송에서와 같이 특정 사용자의 위탁을 받은 해당 호스팅 제공업체에 의해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저장되었으며 관련 회원국의 관할 법원에 의해 그 내용이 분석되고 판단되어 이러한 게시물이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결정된 구체적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36. 소셜 네트워크는 호스팅 제공자에 의해 저장된 게시물이 다양한 사용자 사이에서 신속하게 전송되는 것을 쉽게 만들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분류된 게시물이 나중에 동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에 의해 복제되어 공유될 사실상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37. 호스팅 제공자가 관련자에 대한 모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할 법원은 그 게시물이 이미 위법하다고 결정된 게시물과 문구가 동일한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는 누가 이러한 게시물의 저장을 위임했는지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구문상의 동일성을 고려하여 특정 게시물에 대해 발령된 처분의 경우, 호스팅 제공자에게 그에 의해 저장된 게시물을 모니터링할 일반적인 의무 또는 이러한 정보가 위법한 행

위인지를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탐지할,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 제1항의 의미에서 일반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38. 둘째로 요청법원은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 제1항이 회원국 법원이 호스팅 제공자에게, 이미 위법하다고 결정된 게시물과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해당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지 여부를 본질적으로 묻는다.
39. 선결판단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요청법원이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 개념을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위법성을 결정하는 것을 이끌었던 내용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진술을 전송하고 있는 게시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40. 이러한 점에서 어떤 게시물의 내용상 위법성은 특정한 방식과 관련된 특정 개념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게시물로 전송된 진술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진술에 관한 것일 경우 위법한 것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41. 위법한 행위를 중지하고 그것의 반복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이 이러한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그 내용이 위법하다고 결정된 게시물과 비교할 때 사용된 문구나 그 조합으로 인하여 약간 다르게 형성되었으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진술을 전달하고 있는 게시물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요청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위법하다고 결정된 게시물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게시물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해당처분의 효력을 쉽게 피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자신이 그 피해자가 되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2.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 제1항 및 제출된 판결 34 단락에서 도출되는 바와 같이- 회원국 법원은 한편으로는 호스팅 제공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에 의해 저장된 게시물을 모니터링해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처분을 발급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위법한 게시물의 기반이 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지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43. 특히 전자상거래지침 판단이유 41에서 도출되는 것은 유럽연합 입법부는 그 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 사이에서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는 것이다.
44. 따라서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 제1항이 의미하는 것은, 동 지침 제18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처분의 목적이 특히 개인의 명성과 명예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는 동 지침의 판단이유 41의 관점에서 호스팅 제공자의 과도한 의무를 통해서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5. 전술한 바를 고려하여, 제출된 판결 41 단락에 인용된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은, 이전에 확정된 침해로 인한 관련자의 이름, 침해가 확정된 상황 및 위법하다고 결정된 게시물과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과 같이 처분을 발급한 사람에 의해 충분히 확인되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위법하다고 결정된 게시물과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의 형성의 차이는 어쨌든, 호스팅 제공자가 이러한 게시물을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46. 이러한 상황에서 위 41 및 45 단락에서 설명된 의무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한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로 확장됨으로써, 명예훼손적인 게시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에 충분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이러한 보호는 호스팅 제공자의 과도한 의무를 통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요구되는 모니터링 및 탐지는 처분에서 정확하게 표시된 세부정보를 포함한 게시물로 제한되고 또한 그 의미가 동일한 종류의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은 호스팅 제공자에게 그가 탐지를 위한 자동화된 기술 및 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47. 이러한 처분은 따라서 특히, 호스팅 제공자가 자신에 의해 저장된 게시물을 일반적으로 모니터링할 의무 또는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지해야 할,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 제1항의 의미에서 부과하는 일반적인 의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48. 셋째, 요청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제기한 질문의 문구는, - 선결판단의 근거가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 전자상거래지침 제

15조 제1항이 흑시 제출된 판결 37 및 46 단락의 의미에서의 처분이 국제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과 모순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49.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지침 - 특히 제18조 제1항으로부터 유추되는 바와 같이 - 은 이러한 관점에서, 회원국이 동 지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에, 특히 공간적 측면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50. 결국 전자상거래지침은 제출된 판결 29 및 30 단락을 고려하여 이러한 처분이 국제적인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51. 또한 본 지침의 판단이유 58 및 60 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유럽연합 입법부가 전자상거래의 국제적인 차원을 고려할 때 이 분야의 유럽연합 규범이 국제적인 규범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2. 회원국은, 자신이 발급한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이러한 규범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3. 전술한 내용을 고려하여 처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지침, 특히 제15조 제1항은 회원국 법원에 대해 다음의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호스팅 제공자에게 이미 위법하다고 결정된 게시물과 문구가 동일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해당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는 누가 정보의 저장에 대한 위임을 받았는지와 무관하다;

그러한 처분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탐지가, 그 게시물이 위법하다고 결정된 게시물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또한 처분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진술을 전송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한도에서 그리고 이전에 위법하다고 결정된 게시물을 구성하는 형성과 비교하여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의 형성의 차이가 호스팅 제공자가 이러한 내용을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한도에서, 호스팅 제공자에게 이미 위법하다고 결정된 게시물과 내용이 동일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해당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호스팅 제공자에게 관련 국제법의 범위에서 국제적으로 처분과 관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해당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세 번째 질문

54. 첫 번째 및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고려할 때 세 번째 질문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비용

55. 원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 절차는 회부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 분쟁 조정에 해당한다; 비용은 따라서 동 법원이 결정한다. 다른 참가인이 법원에 진술서를 요청할 때 발생한 비용은 상환될 수 없다.

이러한 근거로 사법재판소(제3 합의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국내시장에서의 정보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특정 법적 측면에 관한 2000년 6월 8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2000/31 지침(“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 특히 제15조 제1항은 회원국 법원에 대해 다음의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호스팅 제공자에게 이미 위법하다고 결정된 게시물과 문구가 동일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해당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는 누가 정보의 저장에 대한 위임을 받았는지와 무관하다;

그러한 처분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탐지가, 그 게시물이 위법하다고 결정된 게시물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또한 처분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진술을 전송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한도에서 그리고 이전에 위법하다고 결정된 게시물을 구성하는 형성과 비교하여 의미가 동일한 게시물의 형성의 차이가 호스팅 제공자가 이러한 내용을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한도에서, 호스팅 제공자에게 이미 위법하다고 결정된 게시물과 내용이 동일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해당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호스팅 제공자에게 관련 국제법의 범위에서 국제적으로 처분과 관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해당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